



- 2025년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-
전시회 참가 참여기업 모집


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하고자 「**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**」의 「**판로개척부문(전시회 참가)**」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2025년 5월 29일
 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I 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** :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내·외 반려동물 산업 선도
- **사업기간** : 2025. 5. ~ 2025. 11.
- **접수기간** : **2025. 5. 29.(목) ~ 2025. 6. 20.(금) 17시까지**
※ 접수 마감일 제출 시 시스템 오류 및 혼잡으로 인해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*지원대상**
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,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<p>① 본사 주소지 또는 공장등록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기업 -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지 않고 공장등록지만 경기도 내에 소재할 경우 공장등록증명원 필수 제출</p> <p>② 공고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상인 기업(업력 3년 이하 기업 지원 불가) ※ 단, 개인사업자가 동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개인사업자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하여 그 업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</p> <p>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</p> <p>④ 반려동물 관련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※ 반려동물 범위 :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 및 햄스터 ※ 상세내용 관리지침 3~5페이지 참조 또는 별첨4 참조</p>

○ 지원규모 : 20개사 내외

○ 지원내용

-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용(부가세 제외)의 80%이내, 기업당 400만원 한도 내 지원

전시회 참가 분야 상세 지원내용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반려동물 관련 전시회 참가 시 기본 부스 임차료의 80% 지원 (400만원 한도, 부가세 제외) - 400만원 한도 내 기업별 전시회 건수 제한 없음(초과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) - 선정일 ~ 11월 23일 이내에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에 한해 지원 가능 - 부스 임차료에 한해 지원 가능, 기타 부대비용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 불가 	

- 기업당 年 1회에 한하며, 동일 전시회로 he기관 및 he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

- '2025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판로개척 부문(온라인마케팅) 참여기업도 신청 가능

○ 지원절차

신청 및 평가 (6~7월)	지원신청서 작성(신청기업)	• 지원신청서 작성(요구서식)
	신청서 접수	• 온라인 신청(www.egbiz.or.kr) • 국내 전시회 참가 : 지원결정일 ~11월 23일까지의 전시회만 가능
	(전시회 참가 신청기업) 법위반기업 조회	• 사업 신청기업의 법위반 조회 및 이의·구제신청 접수
	신청기업 심사 (~7/11 예정)	• 1차 심사(서류평가) • 2차 심사(심사위원회 개최(심층평가))
	지원결정	• 선정결과 개별통보(선정 시 지원협약통지 및 안내문 발송) 이후 과제 진행
과제 추진 (~11월)	전시회 참가	• 국내 반려동물 관련 전시·박람회 참가(개별진행) - 전시회 참가 기간 : 지원결정일 ~11월 23일
과제결과 검토 및 지원금 지급 (상시)	참가비용 선납 (지원기업→대행사)	• 전시박람회 참가 및 비용(참가비, 부스임차료 등(VAT포함)) 전액 완납 • 입금 시 온라인 송금 규정 준수 (세금계산서 발행 必/카드,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)
	완료보고서 제출 (지원기업→진흥원)	• 완료보고서 등 제출(요구 서식 및 증빙자료)
	지원금 지급 (진흥원→지원기업)	• 완료 보고서 및 소요비용·세금 완납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• 최종 결과물 미완료 및 결격사유 발견 시 지원금 환수

II 사업신청

○ 신청방법 : 경기기업비서(구. 이지비즈)(www.egbiz.or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- 기업회원으로 가입/로그인 후 접수 진행

○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시 유의 사항

공 통 사 항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수기간 이후 접수 절대 불가 - 기업당 年 1회에 한하며, 동일 과제로 他기관 및 他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- 상용화부문 참여기업은 신청 불가(2025년 참여기업만 불가) - 대금 지불 시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, 용역기업(대행기관, 주회사, 플랫폼 제공기업 등을 총칭)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함 -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-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- 선정 후 과제 진행 시 과제 및 기업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로 인한 과제 불인정 등의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 -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(신청기업)에게 있음
판로개척 (전시회 참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판로개척 부문 내 중복 신청 가능(동시 진행 가능) - 국내 반려동물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만 신청 가능하며, 부스 임차료에 한해 지원함(기타 부대비용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불가) 단, 기타 전시·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비용 내역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전기, 전화 사용료에 한해 지급 가능함 - 400만원 한도 내 기업별 전시회 건수 제한없음(초과되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) - 신청가능한 전시회는 지원결정일 ~ 11월 23일까지 개최되는 전시회 및 박람회에 한하며, 전시회 참가 완료보고서에는 참가기업을 나타낼 수 있는 컬러사진 3장 이상 첨부하여야 함 - 전시회 참여를 위한 선금 지출 건은 소급 지원가능하나, 지원결정일 이전 전액 지출하거나 전년도 지출 건은 인정되지 않음. -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국내 전시회(예 : G-FAIR KOREA, 시군별 단체관 참여 등)는 지원 제외 대상임

○ 제출서류

분류	내용	제출여부
필수서류	① [서식 제1호] 판로개척 부문 지원 신청서 1부	
	② [서식 제2호] 판로개척 부문 추진계획서 1부	
	③ [서식 제3호] 범위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	
	④ [서식 제4호]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 1부	
	⑤ (신청기업)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- 정부24에서 발급 가능,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 - 신청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 시 아래 '선택서류 중 ② 서류' 추가 제출 필수 ※ 단, 개인사업자가 동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,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산정	
	⑥ 2021, 2022, 2023년 확정재무제표 각 1부 - 홈택스(국세청)에서 발급가능	
	⑦ 4대보험 가입자 명부 -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확인용,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-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(https://www.4insure.or.kr)에서 발급 가능	
	⑧ 국세 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- 정부24에서 발급 가능,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	
	⑨ 전시회 참가비용 내역서(또는 참가신청서) 1부 - 11/23 이내 개최되는 국내 반려동물 관련 전시회 참가 비용 확인용	
선택서류 (해당시)	① 공장등록증명 1부 - 공장만 경기도에 소재 시 필수 제출 서류임, 본사 도내 소재 기업도 제출시 가점대상임 - 정부24에서 발급가능	
	②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※관리지침 4p -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(법인) -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(개인)	
	③ [가점사항] 보유인증서 사본 - 경자유망중소기업, 스타기업, 벤처기업, 이노비즈 등 각종 인증서 - 국내외 특허 및 상표권, 규격인증, 품질인증, 신기술마크 등	
	④ [서식 제5호] 이의 및 구제 신청서	
	⑤ 보유 기업/제품 홍보물 - 카탈로그, 2024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(참가 확인서, 부스 이미지 등)	

○ 평가방법

- 1차 심사 : 요건/서류 평가를 통해 고득점순 2배수 내외 2차 심사 상정

평가항목	배점	평가내용
총 계	100	· 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친 총점
사업준비도	35	· 자체브랜드 및 홍보물(홈페이지, 카탈로그 등) 보유여부 등
재무건전성	40	· 매출액순이익율, 매출규모, 매출액증가율, 고용규모 등
기타	25	· 공장보유여부, 기업인증, 신규기업, 작년도기업, (창업)연계지원 등

※ (공통) 반려동물용품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(2021~2024년) 중 사업화 지원사업 미수혜기업 대상 가점 부여
 ※ (전시회 참가 분야)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판로개척 부문 미수혜기업 대상 가점 부여

- 2차 심사(심층평가) : 기재출 서류를 기반으로 5인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6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

심사항목	배점	세부내용
총 계	100	·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친 총점
시장성	10	· 보유 제품의 전시회 참가 적절성
기술성	35	· 보유 기술 및 서비스의 혁신성
사업성	30	· 제품 시장 경쟁력 및 사업계획의 명확성 · 경쟁사 및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, 고도화 정도
성장성	10	· 기업 성장성 및 향후 계획의 구체성
기대효과	15	·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관련 산업 파급효과

※ 추가 서류 제출 불필요(추가 증빙자료 필요 시 별도 안내 예정)

- **법위반기업 확인 및 감점**(전시회 참가 신청기업만 해당) :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기업(※별첨2 참조)의 경우 **심층평가 점수에서 20% 감점** ※ 법위반기업은 일괄 조회 예정
- **예비 기업 선정** : 최초 선정 시 탈락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을 0.5배수 내외로 선정하고 최초 선정기업의 지원포기 등 **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(60점 이상 과제에 한함)**

Ⅲ 신청제외 기업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
-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 - 가. 부도기업
 - 나. 국세,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
 - 다. 법정관리, 화의기업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로 함)
 - 라.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
 - 마.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(참여기업 대표, 과제책임자 등)
 - 바.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중소기업
-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
-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
-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

Ⅳ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 등급

구 분	제재 및 환수 사유	제재 및 환수 기준	
		참여제한	지원금 환수
중도 포기	·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·실패한 경우	3년	전액환수
	· 수혜 기업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	면제	전액환수
	·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	1년	전액환수
협약 위반	· 중대한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신청제외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	3년	전액환수
	·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	3년	전액환수
	· 고의로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 집행한 경우	3년	해당금액 환수
부당 수취	·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(누계액) 이상인 경우	영구	전액환수
	·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(누계액) 미만인 경우	5년	전액환수
	·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(누계액)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	영구	전액환수

※ 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

Ⅴ 문 의 처
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팀 김민채 대리
(TEL) 031-259-6496 (E-mail) animal@gsa.or.kr

동물보호법

[시행 2025.1.3.] [법률 제19880호, 2024.1.2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"반려동물"이란 반려(伴侶)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동물보호법 시행규칙

[시행 2024.5.27.] [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, 2024.5.27., 일부개정]

제3조(반려동물의 범위) 법 제2조제7호에서 "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"이란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.

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
[시행 2025.01.01.] [경기도 조례 제 8254호, 2023. 10. 1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"반려동물"이란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개·고양이·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.
- "반려동물산업"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.
- "반려동물 의료·돌봄 서비스"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및 양육·관리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- "사회적경제조직"이란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.

별첨 2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

경기도 고시 제2025-23호

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

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1. 17.

경 기 도 지 사

- 추진목적 :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- 적용대상 :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
- (도내 기업)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- 적용사업 : 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,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
가.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
나. 사업유형별 적용제외·유예사업
 - (계도·개선사업)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
 - (사업운영비·소액사업)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, 소액·다수기업 지원사업
 - (비경쟁사업)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
 - (자금·용자지원 사업)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
 - (시·군 매칭(보조) 사업)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
 - (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)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
 - (투자유치 지원)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(인센티브) 사업
- 위반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가. 적용법률
 - (공정)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
 - (노동)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
 -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
 - (납세)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
나.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·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·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
-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가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나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
- 사업참여 제한조건 : 법 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[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(서식2) 내용과 상이]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나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법)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
7. 법위반사실 확인 :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
 - 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
 - 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
 - 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 조회
 - 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

8. 이의 및 구제신청 :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(서식3) 제출
 - 가.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※ 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
 - 나. 삭제

9.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1), 기업의 법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약약서(서식2)

10. 고시 효력일 : 고시일 ~ 차기 고시일 전까지

11. 문의처 :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(☎ 031-8030-2992, -2995)

별첨 3 법위반 사실확인서 서류 확인사항

적용법률		법위반사실 여부 확인·조회
I 공정	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	(소관기관) 공정거래위원회 (확인) 道 행정포털>알림마당>'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' (내용) 기업명(사업자등록번호), 위반법률, 조치일 등
II 노동	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	(소관기관) 고용노동부(기업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) (조회) ① 법위반사실 여부 공문 조회(개인정보 동의서 첨부) ②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*
		*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- 공개기준일(매년 8월 31일)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
III 환경	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	(소관기관) 道 기후환경관리과 (확인) 道 행정포털>알림마당>'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' ※ 지정폐기물 업체의 경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법위반사실 조회
		(소관기관) 기업소재 관할 시·군 (조회) 법위반사실 여부 공문 조회(개인정보 동의서 첨부) ※ 공문 발송 시 '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' 처분기관 현황 참고
IV 납세	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	(소관기관) 세무서, 기업소재 관할 시군 (확인) 국세.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제출

별첨 4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범위

-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범위(관련근거 :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6조의 2(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))

- 지식기반서비스업 :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이 주업종이어야함.

· 정의 : 제조업과 직·간접적 융합발전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제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업종

· 특징 : 최종 생산자에 중간 단계의 주요정보나 전문적 지식을 창출, 제공

· 중요성 : 높은 성장가능성과 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 기여

- 주업종의 기준 :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 하나만을 주업종으로 취급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)

※ 증빙자료 :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(법인),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(개인)

업종	코드	세부업종	기준경비율코드
위생서비스	3701	하수 및 폐수 처리업	900200
	3702	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	900201
	3811	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	900101
	3812	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	900100
	3813~3823	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,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, 지정 폐기물 처리업, 건설 폐기물 처리업	900101
	3824	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	900102
	3831~2	금속류 및 비금속류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	351104, 371000, 372000, 900300
	3900	환경 정화 및 복원업(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,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)	
소매	4711	대형 종합 소매업(백화점, 대형마트, 기타 대형종합 소매업)	521910, 521911
	4731	컴퓨터 및 주변장치,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	523531, 523323
	4781	의약품, 의료용 기구,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	523111, 523114, 523116, 523120, 523131
	4791	통신 판매업(전자상거래, 기타통신판매업)	525101, 525102
운수 및 창고(산업)	4930~4940	도로 화물 운송업 (일반, 용달,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)	602301~5, 602307, 602308
		기타 도로화물 운송업	602309, 630701, 630702
		소화물 전문 운송업(택배업, 늘찬 배달업)	630901, 641201
	5210	보관 및 창고업(일반, 냉장 및 냉동, 농산물, 위험물품 보관업) 기타 보관 창고업	630201~2
5294	화물 취급업(항공 및 육상, 수상 화물 취급업)	630101~2	
출판	5811	서적 출판업(교과서 및 학습서적, 만화, 일반 서적)	221100
	5812	신문,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(정기 광고간행물)	221200
	5819	기타 인쇄물 출판업	221900
소프트웨어 개발공급	5821	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유선 온라인, 모바일, 기타 게임)	722000
	5822	시스템-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722000
	6201	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	721000
	6202	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, 구축 및 관리업	721000
	6209	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	729000
영화제작 배급	5911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921304, 921501~2
	5912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921503
	5920	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	221300, 924901
방송(산업)	6010~6022	라디오 방송업	921301
		유선, 위성 및 기타 방송업, 프로그램 공급업	921303
부가통신	6121	유선 통신업	642001
	6122	무선 및 위성 통신업	642003
	6129	기타 전기 통신업	642002, 642003
정보서비스	6311	자료처리,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	723000
	6312	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	642004
	6391	뉴스 제공업	724000
	6399	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(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)	724000
금융 및 보험(산업)	6412	일반은행(국내, 외국 은행)	659201
	6413	신용조합 및 저축기관(신용조합,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)	659202, 659205

	6420	신탁업 및 집합투자업, 기타 금융 투자업	659900
	6491	금융리스업, 개발금융업, 개발금융기관,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	659203, 659204, 659206
	6499	그 외 기타 금융업(기금 운영업, 지주회사,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)	659902
	6511~6530	생명 보험업, 손해 및 보증 보험업, 사회보장 보험업(사회보장, 건강,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) 연금 및 공제업(개인, 사업 공제업, 연금업)	660100, 660301~3
		재 보험업	660101
	6612	증권 및 선물 중개업	671202
	6619	증권 발행, 관리, 보관 및 거래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,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	671201, 671900
6620	손해 사정업, 보험 대리 및 중개업,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	672000, 749904	
광고	7131	광고 대행업	743002
	7139	기타 광고업(옥외 및 전시, 광고매체 판매, 광고물 문안, 도안, 설계)	743001
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	7140	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741300, 930920
	7153	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	741400, 741401
건축공학 관련서비스	7211	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	742103, 742105
기타 공학관련 서비스	7212	엔지니어링 서비스업 (건축, 토목, 환경,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)	742104, 742106
	7291	기술 시험, 검사 및 분석업(물질성분 검사, 기타 기술 시험, 검사)	742201, 742202, 742209
	7292	측량,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	742101, 742102
기타 사업서비스	7310	수익업	852000
	7320	전문디자인업(인테리어, 제품, 시각, 패션, 섬유류 및 기타 전문디자인)	749910
	7330	사진 촬영 및 처리업	749400, 930904
	7390	그외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(매니저, 통번역,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, 물품 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)	749902, 749903, 749911, 749939
	7410	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749921
	7430	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	
	7521	여행사업(국내, 국외 여행사업)	523990
	7529	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	630600
	7531	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	749200
	7532	보안시스템 서비스업	749200
	7533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	930916, 749200
	7591	사무지원 서비스업(문서작성, 복사)	749901, 749905, 749909
	7599	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(콜센터, 텔레마케팅, 전시 및 행사대행업,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, 포장 및 충전업)	749500, 749907, 749921
교육기관	8550	일반 교습 학원(외국어, 방문교육, 온라인 교육, 기타 일반교습)	809005, 809007
	8561	스포츠 및 레크레이션,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,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	809003, 809004, 921902
	8562	예술 학원(음악, 미술, 기타 예술 학원)	809009, 809012
	8563	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	809005
	8564	사회교육시설	
	8565	직원훈련기관	741402
	8566	기술 및 직업훈련학원(운전, 직업훈련학원)	809001, 809002, 809010, 809011
	8569	그외 기타 교육기관(컴퓨터 학원)	809002
8570	교육지원 서비스업(교육관련 자문평가, 기타교육지원)	930915, 930921	
의료 및 보건	8610	병원(종합, 일반, 치과, 한방, 요양 병원)	851101~3
	8620	의원(일반, 치과,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, 한의원)	851201~851209, 851211~2, 851219, 851905
	8630	공중 보건 의료업	
	8690	기타 보건업(앰블런스서비스업, 유사의료업, 기타 보건업)	851901~04, 851906~08
창작 예술관련 서비스	9011	공연시설 운영업	921901
	9012	공연단체(연극, 무용 및 음악, 기타 공연단체)	921402, 921403
	9013	자영 예술가(공연, 비공연 예술가)	
	9019	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(공연 기획, 공연 및 제작 대리업)	921401
문화서비스	9021	도서관,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	923100
	9022	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	923200
	9023	식물원,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	923300, 924905
	9029	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	923300